###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9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김성원・임이자・김선교

김위상 · 송석준 · 김종양

고동진 • 박충권 • 김소희

조승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 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계획에 따라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자가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의경우 개인부담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이에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 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적인 주거여 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리고 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의 증가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군무원이 제외되어 비교적 연봉이 낮은 초임 군무원에게는 군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군무원(1,320명 대상)의 99.2%가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83.7%는 시급하게 군무원의 주거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군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복무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모든 군무원을 대상으로 군인과 동일한 주거지원 제도를 적용할 경우 연평균 1조 8,413억원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므로, 군무원의 임무·생활여건을 고려하여 격지·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주거지원 대상에 격지·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추가 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9조). 법률 제 호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무원"이란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군인이"를 "군인 및 군무원이"로,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 0조에서 같다)에게"를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 및 군무원(국방부 장관이 정한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말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군인"을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으로, "군인"을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한다.

3. 주거보조비(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에 한정하여 제공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3. "군무원"이란 「군무원인사
	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
	<u>다.</u>
3. ~ 4. (생 략)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
	와 같음)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는 <u>군인이</u> 안정된 주거생활을	<u>군인 및 군무원이</u>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u>군인(지원에</u>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
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 및 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무원(국방부장관이 정한 격지
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u>원을 말한다)에게</u>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u>군인</u> 에 한하여 제공한다.	
	 원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국가는 <u>제1항제1호 및 제2</u>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u>군인에게 입주보증금</u>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수 있다.
- ③ (생 략)
-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 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방부장관이 정한다.

3. 주거보조비(제1호 내지 제2
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제공받
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에 한
정하여 제공한다)
②제1항
<u>군인 및 군무원</u>
<u>.</u>
③ (현행과 같음)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
대자금의 지원, 주거보조비의

지급-----